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제1부 -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1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3		03.01		활어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		03.02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4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필레(fillet)	
6			0304.3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			0304.32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			0304.33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9			0304.39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그 밖의 어류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필레(fillet)	
10			0304.41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생산되었을 것
11			0304.42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2			0304.43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 midae)과·시타리대(Citharidae)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			0304.44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			0304.45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5			0304.46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6			0304.49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그 밖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17			0304.5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18			0304.52	-- 연어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9			0304.53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0			0304.54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1			0304.55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2			0304.59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의 냉동한 필레(fillet)	
23			0304.6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4			0304.62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5			0304.63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6			0304.69	-- 기타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fillet)	
27			0304.71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8			0304.72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9			0304.73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0			0304.74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1			0304.75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2			0304.79	-- 기타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그 밖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fillet)	
33			0304.81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4			0304.82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35			0304.83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 midae)과·시타리대(Citharidae)과]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6			0304.84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7			0304.85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8			0304.86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9			0304.87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 (Katsuwonus) pelamis)]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0			0304.89	-- 기타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그 밖의 냉동한 것	
41			0304.91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2			0304.92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3			0304.93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4			0304.94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Theragra chalcogramma)]	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5			0304.95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는 제외한다]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6			0304.99	-- 기타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5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7			0305.10	-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8			0305.20	- 어류의 간과 어란(魚卵)(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훈제한 어류, 필레를 포함한다	
49			0305.3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0			0305.32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51			0305.39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훈제한 어류[필레(fillet)를 포함하며,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52			0305.41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3			0305.42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4			0305.43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5			0305.44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56			0305.49	-- 기타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건조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 것으로서 염장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57			0305.51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8			0305.59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일 것
				- 염장한 어류(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및 염수장한 어류	
59			0305.61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60			0305.62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61			0305.63	-- 멸치[엔그로리스(Engraulis)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62			0305.64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일 것
63			0305.69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일 것
				- 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위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64			0305.71	-- 상어 지느러미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65			0305.72	-- 어류의 머리·꼬리·위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66			0305.79	-- 기타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 냉동한 것	
67			0306.1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파누리루스(panulirus)종·자수스(Jasus)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68			0306.12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69			0306.14	-- 게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0			0306.15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1			0306.16	--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종·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2			0306.17	-- 그 밖의 새우류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3			0306.19	-- 기타[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냉동하지 아니한 것	
74			0306.2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파누리루스(panulirus)종·자수스(Jasus)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5			0306.22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6			0306.24	-- 게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7			0306.25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8			0306.26	--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종·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9			0306.27	-- 그 밖의 새우류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0			0306.29	-- 기타[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 굴	
81			0307.1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2			0307.19	-- 기타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가리비과의 조개[펙텐(Pecten)·클라미스(Chlamys)·프라코펙텐(Placopecten)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83			0307.2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4			0307.29	-- 기타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홍합[미틸루스(Mytilus)종·페르나(Perna)종]	
85			0307.3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6			0307.39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로리고(Loligo)종·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	
87			0307.4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8			0307.49	-- 기타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문어[옥토퍼스(Octopus)종]	
89			0307.5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90			0307.59	-- 기타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91			0307.60	-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생산되었을 것
				-- 클램(clam), 새조개와 피조개 [아르치대(Arcidae)과・아르크티치대(Arcticidae)과・카르디대(Cardiidae)과・도나치대(Donacidae)과・히아텔리대(Hiatellidae)과・마르크트리대(Mactridae)과・메소데스마티대(Mesodesmatidae)과・마이이대(Myidae)과・세멜리대(Semelidae)과・솔레쿠르티대(Solecurtidae)과・솔레니대(Solenidae)과・트리다크니대(Tridacnidae)과・베네리대(Veneridae)과]	
92			0307.7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93			0307.79	-- 기타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94			0307.8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95			0307.89	-- 기타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기타[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96			0307.9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97			0307.99	-- 기타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8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 해삼[스티코푸스 자포니쿠스(Stichopus japonicus), 홀로투리오이대(Holothurioidea)과]	
98			0308.1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99			0308.19	-- 기타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성게[스트론길로센트로투스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Strongylocentrotus)종・파라센트로투스 리비두스(Paracentrotus lividus)・록세치누스 알버스(Loxechinus albus)・에치치누스 에스쿨렌투스(Echichinus esculentus)	
100			0308.2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1			0308.29	-- 기타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2			0308.30	-- 해파리[로필레마(Rhopilema)종]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3			0308.90	-- 기타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4			0401.10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 이하의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5			0401.20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 100분의 6이하의 것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6			0401.4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고 100분의 10 이하인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7			0401.5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8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인 것
109		**04.03**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일・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4.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 성분이 총 우유 성분의 50% 이하여야 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인 것
		04.04		**유청(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유(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10			0404.10	-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인 것
111			0404.90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2		**04.05**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생산되었을 것
		04.06		**치즈와 커드(curd)**	
113			0406.10	-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4			0406.20	-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5			0406.30	-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406.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 성분이 총 우유 성분의 50% 이하여야 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인 것
116			0406.40	-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7			0406.90	- 그 밖의 치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8		**04.07**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9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20		**04.09**		**천연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21		**04.1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22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2부 - 식물성 생산품				
123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24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8류			**식용의 과일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08.01		**코코넛·브라질너트·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코코넛	
125			0801.11	-- 말린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126			0801.12	--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27			0801.19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브라질넛	
128			0801.2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29			0801.22	-- 껍데기를 벗긴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캐슈넛	
130			0801.3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1			0801.32	-- 껍데기를 벗긴 것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2		**08.02**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3		**08.03**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134			0804.10	- 대추야자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5			0804.20	- 무화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6			0804.30	- 파인애플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7			0804.40	- 아보카도(avocado)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8			0804.50	- 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9		**08.05**		**감귤류의 과일(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0		**08.06**		**포도(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1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2		**08.08**		**사과·배·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3		**08.09**		**살구·체리·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자두·블랙손(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4		**08.10**		**그 밖의 과일(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5		**08.11**		**냉동 과일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생산되었을 것
146		**08.12**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일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8.13		**건조한 과일(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일의 혼합물**	
147			0813.10	- 살구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8			0813.20	- 프룬(prune)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9			0813.30	- 사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50			0813.40	- 그 밖의 과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51			0813.50	-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일의 혼합물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52		**08.14**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9류			**커피·차·마테(maté)·향신료**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53			0901.1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54			0901.1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일 것
				-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155			0901.2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일 것
156			0901.2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일 것
157			0901.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일 것
158		**09.02**		**다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59		**09.03**		**마테(maté)**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9.04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 후추	
160			0904.1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61			0904.1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일 것
				-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162			0904.21	--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63			0904.2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64		**09.05**		**바닐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165			0906.11	-- 계피[신나모멈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66			0906.19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67			0906.2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일 것
168		**09.07**		**정향(丁香)(과일·꽃·꽃대로 한정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69		**09.08**		**육두구(肉荳蔻)·메이스(mace)·소두구(小荳蔻)**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70		**09.09**		**아니스(anise)·대회향(大茴香)·회향(茴香)·고수(coriander)·쿠민(cumin)·캐러웨이(caraway)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9.10		**생강·사프란(saffron)·심황[강황(薑黃)]·타임(thyme)·월계수 잎·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	
				- 생강	
171			0910.1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72			0910.1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73			0910.20	- 사프란(saffron)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74			0910.30	- 심황[강황(薑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그 밖의 향신료	
175			0910.91	-- 혼합물(제9류의 주 제1호나목의 것으로 한정한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일 것
176			0910.99	-- 기타	가. 타임 및 월계수의 잎: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나.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일 것
177	**제10류**			**곡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178		**11.01**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제11.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1.02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179			1102.20	- 옥수수가루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80			1102.90	- 기타	가. 쌀가루, 호밀가루: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나.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가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11.03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	
				-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81			1103.11	-- 밀로 만든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3.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182			1103.13	-- 옥수수로 만든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3.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183			1103.19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3.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184			1103.20	- 펠릿(pellet)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3.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185			1104.12	-- 귀리로 만든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4.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186			1104.19	-- 기타 곡물로 만든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4.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	
187			1104.22	-- 귀리로 만든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88			1104.23	-- 옥수수로 만든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89			1104.29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90			1104.30	- 곡물의 씨눈[원래 모양인 것·압축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05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 플레이크(flake) · 알갱이 · 펠릿(pellet)	
191			1105.10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192			1105.20	- 플레이크(flake) · 알갱이 · 펠릿(pellet)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93		**11.06**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 · 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11.07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194			1107.10	- 볶지 않은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95			1107.20	- 볶은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96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197		**11.09**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98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일, 각종 종자와 과일, 공업용 · 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13류			**락(lac), 검 · 수지 ·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99		**13.01**		**락(lac), 천연 검 · 수지 · 검 수지 · 올레오레진(oleoresin)[예: 발삼(balsam)]**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02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 · 그 밖의 점질물과 증점제(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200			1302.11	-- 아편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01			1302.12	-- 감초로 만든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02			1302.13	-- 홉(hop)으로 만든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03			1302.19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04			1302.20	- 펙틴질 ·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는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상관없다)	
205			1302.31	-- 한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 가격의 70% 이상인 것
206			1302.32	-- 로커스트콩(locust bean)·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07			1302.39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08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3부 -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15.15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209			1515.5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515.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2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12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15.17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210			1517.10	-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51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211			1517.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일 것
212		**15.18**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5.1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제4부 -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213		**16.01**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일 것
		16.02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	
214			1602.20	- 동물 간으로 만든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01.05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215			1602.31	-- 칠면조로 만든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2.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16			1602.32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60% 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17			1602.39	--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2.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돼지로 만든 것	
218			1602.41	--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일 것
219			1602.42	-- 어깨살과 그 절단육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2.4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20			1602.4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2.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21			1602.50	- 소로 만든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일 것
222			1602.90	-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16.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 어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223			1604.11	-- 연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4.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224			1604.12	-- 청어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일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225			1604.13	-- 정어리・사르디넬라(Sardinella)・브리스링(brisling)・스프랫(sprat)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일 것
226			1604.15	-- 고등어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일 것
227			1604.16	-- 멸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4.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일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28			1604.17	-- 뱀장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4.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229			1604.19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4.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230			1604.20	-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4.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231			1604.31	-- 캐비아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4.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232			1604.32	-- 캐비아 대용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4.3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16.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233			1605.10	- 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35% 이상인 것
				- 새우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35% 이상인 것
234			1605.21	--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35% 이상인 것
235			1605.29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35% 이상인 것
236			1605.30	- 바닷가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37			1605.40	- 그 밖의 갑각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연체동물	
238			1605.51	-- 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5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39			1605.52	-- 가리비과의 조개(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5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40			1605.53	-- 홍합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5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41			1605.54	-- 갑오징어와 오징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54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42			1605.55	-- 문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5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43			1605.56	-- 클램(clam), 새조개, 피조개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5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44			1605.57	-- 전복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5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45			1605.58	--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5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246			1605.59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5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247			1605.61	-- 해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6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48			1605.62	-- 성게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6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49			1605.63	-- 해파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6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50			1605.69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9.01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51			1901.10	- 유아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04.01호부터 제04.04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에 한정한다.
252			1901.20	-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에 한정한다.
253			1901.90	- 기타	한국의 HS 제1901.90.2010호, 제1901.90.202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 다른 소호에 대해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정한다.
		19.04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54			1904.90	- 기타	한국의 HS 제1904.90.1010호, 제1904.90.1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비원산지 재료가 해당 상품의 소호에서 다른 소호로 제공되지 않은 한 최소허용기준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비원산지 재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다른 소호에 대해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 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 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 스위트 비스킷, 와플, 웨이퍼	
255			1905.31	-- 스위트 비스킷	다른 류에 해당하는 제1905.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256			1905.32	-- 와플과 웨이퍼	다른 류에 해당하는 제1905.3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257			1905.90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제190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제20류			**채소·과일·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0.03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버섯과 송로(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58			2003.90	-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0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60% 이상인 것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그 밖의 채소(채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259			2005.91	-- 죽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일 것
260			2005.99	-- 기타	한국의 HS 제2005.99.1000호에 대해서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6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다른 소호에 대해서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261		**20.06**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일·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일 것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일·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62			2008.11	-- 땅콩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일 것. 다만, 제12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63			2008.1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008.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0802.31호, 제0802.32호, 제0802.40호 및 제0802.90호에 해당하는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0802.31호, 제0802.32호, 제0802.40호 및 제08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64			2008.20	- 파인애플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008.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265			2008.93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008.9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266			2008.97	-- 혼합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008.9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267			2008.99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008.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20.09		**과일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파인애플쥬스	
268			2009.41	-- 기준당도(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009.4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69			2009.49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009.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그 밖에 한 가지 과일이나 채소로 된 주스	
270			2009.81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009.8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271			2009.89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009.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272			2009.90	- 혼합 주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00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21.01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273			2101.20	-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09.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09.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274			2103.90	- 기타	한국의 HS 제2103.90.1030호, 제2103.90.9030호, 제2103.90.9090호에 대해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다른 소호에 대해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275			2106.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제22류			**음료·주류·식초**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일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276			2202.10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일 것
277			2202.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78		**22.03**		**맥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2.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	
				- 그 밖의 포도주와 알코올 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포도즙	
279			2204.21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204.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280			2204.29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204.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22.0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281			2208.20	-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208.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282			2208.30	- 위스키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208.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일 것
283			2208.70	-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23.01		**육·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수지박**	
284			2301.20	-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3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23.06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85			2306.50	-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306.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86		**23.08**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3.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3.09		**사료용 조제품**	
287			2309.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일 것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288		**24.01**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4.02		**시가(cigar)·셔루트(cheroot)·시가릴로(cigarillo)·궐련(담배나 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289			2402.20	-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40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24.03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FOB가격의 60%를 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제5부 - 광물성 생산품				
	제29류			**유기화학품**	
		29.21		**아민관능화합물**	
				- 비환식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0			2921.21	--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92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291			2921.29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921.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 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			2922.12	--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92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293			2922.13	-- 트리에탄올아민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922.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	
294			2922.41	-- 리신과 그 에스테르, 이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922.4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29.23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5			2923.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92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33.01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앱솔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냉침법(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296			3301.30	- 레지노이드(resinoid)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3301.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일 것
297			3301.90	-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3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다만,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제7부 -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40.11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	
298			4011.10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1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포함한다]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55%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299			4011.20	- 버스용·화물차용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1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55%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300			4011.40	- 모터사이클용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11.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55%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제8부 -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2.03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장갑류	
301			4203.21	-- 운동용으로 특수디자인 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4203.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1부 -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50류			**견**	
302		**50.01**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0.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03		**50.02**		**생사(꼰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0.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04		**50.03**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0.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05		**50.06**		**견사·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제50.04호 및 제50.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06		**50.07**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0.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307		51.01		양모[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1.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08		51.02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1.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09		51.03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1.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10		51.04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1.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11		51.05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코움(comb)한 단편 모양인 양모를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1.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12		51.09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	제51.06호부터 제51.08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1.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13		51.11		직물[카드(car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1.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14		51.12		직물[코움(comb)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1.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15		51.13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1.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일 것
	제52류			면	
316		52.01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2.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17		52.02		면 웨이스트(waste)[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2.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18		52.03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2.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19		52.07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제52.04호부터 제52.06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2.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제 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320		53.01		아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3.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일 것
321		53.02		대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대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3.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22		53.03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아마·대마·라미(ramie)는 제외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3.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23		53.05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tow)·노일(noil)·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3.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24		53.09		아마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3.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25		53.10		제53.03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의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26		53.11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3.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327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4.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28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4.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29		54.03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4.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30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31		54.05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4.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32		54.06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4.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333		55.01		합성필라멘트 토우(tow)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5.01호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34		55.02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5.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35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5.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36		55.04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5.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37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노일(noil)·실의 웨이스트·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5.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38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5.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39		55.07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5.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40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제55.08호부터 제55.10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5.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341		56.01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6.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42		56.02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6.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43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6.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44		56.04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6.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45		56.05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가루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6.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46		56.06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6.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47		56.07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6.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48		56.08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6.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59		56.09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실·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6.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350		57.01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매듭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7.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51		57.02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를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7.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352		57.03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53		57.04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펠트(felt)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7.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54		57.05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7.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355		58.01		파일(pile)직물·셔닐(chenille)직물(제58.02호나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8.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56		58.02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터프트(tuft)한 직물(제5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57		58.03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8.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58		58.04		튈(tulle)과 그 밖의 망직물(제직한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레이스[원단 상태·스트립(strip)이나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편물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8.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59		58.05		고블랭(gobelin)직·플랜더스(flanders)직·오뷔송(aubusson)직·보베(beauvais)직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예: 프티포인트(petit point)·십자수](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8.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60		58.06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8.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61		58.07		섬유로 만든 레이블(label),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8.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62		58.08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술・폼퐁(pompon)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8.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63		58.09		금속사의 직물과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8.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364		59.01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투사포(tracing cloth), 회화용 캔버스, 모자 제조에 사용되는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9.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65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tyre cord)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9.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66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9.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67		59.04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9.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68		59.05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9.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69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9.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70		59.07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9.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371		59.08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편직한 것으로 한정한다), 백열가스 맨틀(mantle)과 백열가스 맨틀(mantle)용 관 모양의 편물(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9.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72		59.09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9.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73		59.10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9.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74		59.11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9.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제 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375		61.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3호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76		61.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77		61.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378		61.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79		61.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80		61.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81		61.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82		61.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83		61.09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84		61.10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85		61.11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386		61.12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87		61.13		의류(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88		61.14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89		61.15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90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91		61.17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과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392		62.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93		62.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	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94		62.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 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95		62.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 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96		62.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 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97		62.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 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98		62.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 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399		62.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 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00		62.09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 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01		62.10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 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02		62.11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 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03		62.12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브레이스(braces)·서스펜더(suspender)·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 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04		62.13		**손수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 및 제54.08호,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 및 제58.02호,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물은 원산지 상품이며, 그 상품은 수입국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05		62.14		**숄(shawl)·스카프·머플러·만틸라(mantilla)·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 및 제54.08호,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 및 제58.02호,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물은 원산지 상품이며, 그 상품은 수입국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06		62.15		**넥타이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 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07		62.16		**장갑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 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08		62.17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409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3.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 및 제54.08호,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 및 제58.02호,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정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10		63.02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3.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 및 제54.08호,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 및 제58.02호,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정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11		63.03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한다]·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valance)**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3.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 및 제54.08호,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 및 제58.02호,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정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 이상인 것
412		63.04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3.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 및 제54.08호,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 및 제58.02호,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정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 이상인 것
413		63.05		포장용 빈 포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3.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 및 제54.08호,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 및 제58.02호,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정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 이상인 것
414		63.06		방수포(tarpaulin)·차양·차일, 텐트, 돛[보트용·세일보드(sailboard)용·랜드크래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3.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 및 제54.08호,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 및 제58.02호,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정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 이상인 것
415		63.07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3.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 및 제54.08호,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 및 제58.02호,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물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정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 이상인 것
416		63.08		**러그(rug)용・태피스트리(tapestry)용・자수한 테이블보용・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3.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 및 제54.08호,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 및 제58.02호,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정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 이상인 것
417		63.09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18		63.10		**넝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스크랩(scrap),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 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13부 -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2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조각・가루**	
				- 기타	
419			6802.91	--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설화석고(alabaster)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802.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68.11		**석면시멘트 제품・셀룰로오스파이버 시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	
420			6811.40	- 석면을 함유한 것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타 쉬트・패널・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타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421			6811.82	- 그 밖의 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811.8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제14부 -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422		**71.01**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423			7102.10	- 선별하지 않은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 공업용	
424			7102.21	--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2.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25			7102.29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2.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 공업용이 아닌 것	
426			7102.31	--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2.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27			7102.39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2.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71.03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428			7103.10	-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	
429			7103.91	-- 루비·사파이어·에메랄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3.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30			7103.99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3.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71.04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431			7104.10	- 압전기용 석영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4.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32			7104.20	- 기타(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4.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33			7104.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71.05		**천연의 것이나 합성한 귀석·반귀석의 더스트(dust)와 가루**	
434			7105.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35			7113.11	--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13.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36			7113.2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13.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71.14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37			7114.11	--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14.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38			7114.2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14.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71.15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그 밖의 제품**	
439			7115.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1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71.16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의 제품**	
440			7116.10	- 천연진주나 양식진주로 만든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1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41			7116.20	-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만든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16.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71.17		**모조 신변장식용품**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2			7117.11	--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17.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43			7117.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1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제15부 -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제72류			**철강**	
444		**72.0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45			7220.11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제7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20.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46			7220.12	--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제7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20.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447		**74.08**		**구리의 선**	제74.07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4.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48		**74.13**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제74.07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4.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449		**76.05**		**알루미늄의 선**	제76.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6.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50		**76.14**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제76.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6.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81.04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451			8104.30	-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rasping)·연삭설(tuming)·알갱이, 가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104.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83.05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서신용 클립·레터코너(letter corner)·서류용 클립·색인용 태그와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예: 사무실용·가구류용·포장용의 것)**	
452			8305.10	-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30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53			8305.20	-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305.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54			8305.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30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제16부 -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4.15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455			8415.10	- 창형이나 벽형(일체형이나 분리형으로 한정한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일 것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 탑승교	
456			8479.71	--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479.7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57			8479.79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479.7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 그 밖의 기기	
458			8479.81	-- 금속 처리용(전선권선기를 포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한다)	8479.8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59			8479.89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479.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84.82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460			8482.10	- 볼베어링(ball bearing)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48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84.86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461			8486.10	-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제조용 기계와 기기	같은 소호 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48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62			8486.20	-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같은 소호 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486.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63			8486.30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같은 소호 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486.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64			8486.40	-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같은 소호 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486.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465			8504.50	- 그 밖의 유도자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04.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인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85.08		**진공청소기**	
				- 전동기를 갖춘 것	
466			8508.19	-- 기타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가정용 진공청소기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타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67			8508.60	- 그 밖의 진공청소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08.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468			8517.12	--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17.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통신망이나 원거리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469			8517.61	-- 기지국	가. 제8517.6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송신기기가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타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70			8517.62	--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가. 제8517.6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송신기기가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 기기를 포함한다]	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타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71			8517.70	- 부분품	같은 소호 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17.70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472			8518.30	-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18.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73			8518.50	- 음향증폭세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18.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85.19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474			8519.30	-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턴 테이블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타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85.22		**제85.19호나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475			8522.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2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85.23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matrice)과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476			8523.52	-- 스마트카드	같은 소호 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23.5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 · 음성기록기기 ·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 비디오카메라레코더**	
477			8525.60	-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25.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 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 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78			8528.71	-- 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지 않은 것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텔레비전 천연색 수신용의 기기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타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79			8528.72	--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28.7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85.29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0			8529.90	- 기타	같은 소호 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2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85.32		**축전기[고정식 · 가변식 · 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고정식 축전기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481			8532.22	-- 알루미늄 전해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32.2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482			8536.10	- 퓨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3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인 것
		85.39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 그 밖의 필라멘트 램프(자외선 램프나 적외선램프는 제외한다)	
483			8539.21	-- 텅스텐 할로겐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39.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 방전램프(자외선램프는 제외한다)	
484			8539.31	--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39.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85			8539.90	-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3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85.40		**열전자관·냉음극관·광전관[예: 진공관·증기나 가스를 봉입한 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선관·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486			8540.20	-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영상변환관, 영상증강관(image intensifier), 그 밖의 광전관 (photocathode tube)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40.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87			8540.40	-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제8540.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488			8540.60	- 그 밖의 음극선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40.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 마이크로웨이브관[예: 자전관(magnetron)·속도변조관(klystron)·진행파관(traveling wave tube)·카시노트론(carcinotron)]. 다만, 그리드(grid) 제어관은 제외한다.	
489			8540.71	-- 자전관(magnetron)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40.7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인 것
490			8540.79	-- 기타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속도변조관(klystron)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40.7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 그 밖의 관	
491			8540.89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40.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 부분품	
492			8540.91	-- 음극선관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40.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493			8541.90	-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4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85.43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494			8543.70	- 그 밖의 기기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일렉트릭 펜스 에너자이저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타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495			8702.10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일 것
496			8702.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일 것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 그 밖의 차량(왕복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497			8703.21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일 것
498			8703.22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일 것
599			8703.23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일 것
500			8703.24	--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일 것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의 것으로 한정한다]	
501			8703.31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일 것
502			8703.32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일 것
503			8703.33	--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일 것
504			8703.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일 것
		87.04		**화물자동차**	
505			8704.10	-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일 것
				- 그 밖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506			8704.2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일 것
507			8704.22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고 20톤 이하인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일 것
508			8704.23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일 것
				-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509			8704.3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일 것
510			8704.32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일 것
511			8704.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일 것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512			8708.40	-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어박스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나. 부분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인 것
513			8708.50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및 비구동 차축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나. 부분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인 것
514			8708.80	-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서스펜션 시스템(쇼크업소버를 포함)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나. 부분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인 것
				-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515			8708.91	-- 방열기와 그 부분품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방열기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나. 부분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인 것
516			8708.92	--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나. 부분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인 것
517			8708.94	--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일 것
518			8708.95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일 것
519			8708.99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일 것
520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 이상일 것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7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탱크·코퍼댐(coffer-dam)·부잔교(landing stage)·부표·수로부표]**	
521			8907.10	-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부교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90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50% 이상인 것
	제18부 -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2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대물렌즈	
522			9002.11	--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9002.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523			9002.19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90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524			9002.20	- 필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900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525			9002.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90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제20부 - 잡품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 (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94.03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526			9403.30	- 사무실용 목제가구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60% 이상일 것
527			9403.40	- 주방용 목제가구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60% 이상일 것
528			9403.50	- 침실용 목제가구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60% 이상일 것
529			9403.60	- 그 밖의 목제가구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60% 이상일 것